

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24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
1.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2호	500만원
2.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(改任)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.	법 제37조제1항제3호	500만원
3.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·도지사가 정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4호	300만원
4. 법 제3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양도·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5호	300만원
5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6호	500만원
6. 법 제39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7호	300만원
7.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8호	500만원